

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11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11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 설치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88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
-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초지의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등 사안 발생시 운용하고 있으나, 초지법상 2개 시·군 이상에 걸쳐 위치한 지역 이외에는 시·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어 충청북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코자 함.

4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폐지

5. 검토 의견

본 폐지조례안은,

충청북도가 초지의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이 발생할 시 운용하고 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,

1980. 6. 7 (조례 제1016호) 본 조례가 초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,

초지법 제5조에 규정된 초지가 2개 시·군 이상에 걸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·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

2개 시·군에 걸쳐 있는 초지도, 2개 시·군에 각각 분할하여 초지조성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

'88년 이후 사안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희박한

본 조례는 행정의 효율화면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6. 첨부

-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